

제339회 임시회
2015. 4. 30.(목)

심 사 보 고 서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 4. 30.(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4월 22일

-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조운희)

가. 제안이유

○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예지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융합 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를 의약바이오 분야의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청주시와 공동 부담하여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현재 도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50%를 청주시에 매각하기 위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2018년(4년)
- 건립규모
 - 부지면적 : 25,623m² ※ **청주시 시유지 무상사용**
 - 건축연면적 : 10,400m²(지상2층, 4개동)
- 사 업 비 : 260억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체험관 3동, 전시관 1동

□ 재산의 처분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일부매각》

- 대상부지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번지
- 매각규모 : 6,467.5m²
- 매각시기 : 2015년 하반기
- 매각방안 : 도 소유 부지의 50%를 청주시에 매각
(1/2씩 공유지분 소유)
- ※ 한국세라믹기술원에 20년간 부지사용권만 제공(갱신가능)

| 구 분 | 단 위 | 계 | 충북도 | 청주시 |
|-------|----------------|-----------|-----------|-----------|
| 지 분 율 | % | 100 | 50 | 50 |
| 지분면적 | m ² | 12,935 | 6,467.5 | 6,467.5 |
| 매각금액 | 천원 | 2,022,776 | 1,011,388 | 1,011,388 |

⇒ 부지가격은 조성원가(156,380원/m²)로 산정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융합 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를 청주시와 함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도 소유의 부지 50%를 청주시에 매각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한국세라믹기술원에 건립부지를 제공하는 것임.
- 청주시 월오동 163번지 일원에 건립될 재난안전체험관은 총 사업비 260억원으로 주요시설은 화재, 수난, 선박, 항공기, 열차, 고층 건축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대피훈련 등을 할 수 있는 체험관 3개소와 안전관련 유물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관 1개소를 2018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려는 것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체험교육을 통해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난안전 체험관 건립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충청북도는 지난 2014년 12월 24일 청주시와 공동으로 충북

오송의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바이오와 세라믹 소재를 융합하는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청주시에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일부매각도 청주시와 공동으로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유치를 위해 부지를 제공하려 하는 것이며 2019년에 준공 예정인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는 바이오소재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충북의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
|----------|---------|---|
| 의안 번호 | 제 146 호 | 일 |
|----------|---------|---|

제출연월일 : 2015년 4월 13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예지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의「융합 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를 의약바이오 분야의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유치하기 위하여 청주시와 공동부담하여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현재 도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50%를 청주시에 매각하기 위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4년)
- 건립규모
 - 부지면적 : 25,623㎡ ※청주시 사유지 무상사용
 - 건축연면적 : 10,400㎡(지상 2층, 4개동)
- 사업비 : 260억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체험관 3동, 전시관 1동

□ 재산의 처분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일부매각》

- 대상부지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번지
- 매각규모 : 6,467.5㎡
- 매각시기 : 2015년 하반기
- 매각방안 : 도 소유 부지의 50%를 청주시에 매각(1/2씩 공유지분 소유)
 - ※ 한국세라믹기술원에 20년간 부지사용권만 제공(갱신가능)

| 구 분 | 단 위 | 계 | 충북도 | 청주시 |
|-------|-----|-----------|-----------|-----------|
| 지 분 율 | % | 100 | 50 | 50 |
| 지분면적 | ㎡ | 12,935 | 6,467.5 | 6,467.5 |
| 매각금액 | 천원 | 2,022,776 | 1,011,388 | 1,011,388 |

⇒ 부지가격은 조성원가(156,380원/㎡)로 산정

3.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 일련 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 득 기 시 | 취 득 사 유 | 취득재산 전소유자 | 비고 |
|----------|---------|-------------------------|--------|------------|------------|---------------|--------------|----|
| | 지목 | 소 재 지 | 면 적 | | | | | |
| 계 | 토지 | | | | | | | |
| | 건물 | 1건 | 10,400 | 26,000,000 | | | | |
| | 기타 | | | | | | | |
| 1 | 토지 | | | | | | | |
| | 건물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163번지 일원 | 10,400 | 26,000,000 | 2018.8 |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 - | 신축 |
| | 기타 | | | | | | | |
| 2 | 토지 | | 이 | 하 | 여 | 백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3 | 토지 | | | | |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4 | 토지 | | | | |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5 | 토지 | | | | |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2015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3)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 일련 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처 분 기 | 처 분 사 유 | 매수자 | 비고 |
|----------|---------|--------------------------|---------|-----------|--------------|--------------------------------------|-----|----------|
| | 지목 | 소 재 지 | 면 적 | | | | | |
| 계 | 토지 | 1건 | 6,467.5 | 1,011,388 | 2015.하반 기 |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1 | 토지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번지 | 6,467.5 | 1,011,388 | 2015.하반 기 | 융합바이 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공공부담 | 청주시 | 일부 매각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2 | 토지 | | 이 | 하 | 여 | 백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3 | 토지 | | | | |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4 | 토지 | | | | |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5 | 토지 | | | | |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관계 법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
|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
|---|--|
|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